

청주지방법원 2023. 5. 10 선고 2022가단5715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국희(소송구조)
변 론 종 결 2023. 3. 29.
판 결 선 고 2023. 5. 1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829,096원 및 그중 18,606,233원에 대하여 2021. 11. 30.부터 2022. 4. 4.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5. 18. 체결된

증여계약을 20,378,76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20,378,76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11. 11.경 ‘C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소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서의 발급 등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신용보증을 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용보증서{피보증인 피고 A, 보증번호 E, 보증금액 19,000,000원, 보증기한 2025. 11. 11., 대출과목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분할상환), 보증방법 개별보증, 보증비율 95%}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 A은 같은 날 소외 은행에게 위 신용보증서를 교부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 A이 2021. 7. 13.경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자,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발생 통지를 하면서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1. 11. 30. 소외 은행에게 그때까지의 대출원리금 중 19,281,793원(= 원금 19,000,000원 + 이자 281,793원)을 변제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기한 내에 피고 A이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때에는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확정손해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소외 은행에게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2021. 11. 30. 당시 미환급보증료 675,560원을 상계처리함에 따라 대위변제금 잔액은 18,606,233원이 되었고, 확정손해금은 148원, 대지급금은 222,715원이 각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이다.

라. 한편, 피고들은 2012. 7. 13. 혼인신고를 한 부부인데, 피고 A은 2021. 5. 18.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그 후 피고들은 2021. 6. 14.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28. F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64,34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21. 4. 29. 주식회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87,7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증여 이후 피고 B이, 2021. 5. 21. 주식회사 G의 피담보채권 58,535,260원을 변제하여 같은 날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이어 2021. 8. 24. F 주식회사의 피담보채권 133,789,864원을 변제하여 같은 날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위 증여 당시 피고 A의 적극재산은 시가 268,5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시가 26,500,000원 상당의 2019년형 싼타페 승용차가 전부였고, 소극재산은 위 마.항의 근저당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77,713,977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3, 14호증, 을나 제3, 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서 18,829,096원(= 대위변제금 잔액 18,606,233원 + 확정손해금 148원 + 대지급금 222,715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18,606,233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2. 2. 4.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 A이 배우자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20,378,765원(= 구상금 18,829,096원 + 지연손해금 1,549,669원(대위변제금 잔액 18,606,233원에 대한 2021. 11. 30.부터 2022. 12. 14.까지 연 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0,378,7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위 증여계약은 피고 B이 피고 A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한하여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49816 판결 등 참조).

한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을나 제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은 2012. 7. 13. 피고 A과 혼인하였는데, 2018년경부터 피고 A이 잦은 외도를 하고 여러 금융기관으로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고 A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그 결과 2020년경에는 피고 A과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들에게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2명(H과 I, 각 J생) 있는데, 협의상 이혼 당시 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 B으로 정하였고, 피고 A은 양육비로 위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1인당 매월 5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이혼 후 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피고 B에게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지출한 돈의 액수는 합계 192,325,124원(= 주식회사 G 58,535,260원 + F 주식회사 133,789,864원)으로서,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268,500,000원의 약 71%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고 A의 채무 합계액 377,713,977원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인 점, ④ 한편, 이혼 후 피고 A은 2019년형 싼타페 승용차만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시가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는 26,500,000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은 2021. 5. 18. 피고 B과 사이에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고, 그 후 피고들이 2021. 6. 14. 협의상 이혼을 한 것으로서, 위 증여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포함한 재산분할의 실질을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피고들 사이의 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